

#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285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1. 10. 08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1년 10월 0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 및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,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법적근거
 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공공기관의 책무)
 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3조(청렴의 의무)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(안 제1조~제2조)
  -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 실현 및 청렴문화 조성·확산을 목적
  - 용어(공직자 및 부패행위)의 뜻을 정의
-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하여 규정(안 제3조~제4조)
  - 법령 준수, 공정·청렴 직무수행, 일체의 부패행위 금지
-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(안 제6조)
  - 매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
-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(안 제7조)
  -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추진
-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9조)
  - 각 사업시행 및 청렴도 평가·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
-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(안 제10조)

## 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 및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시행으로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